

# 소 장

원 고 〇 〇 〇 (金〇〇)

1900년 0월 0일생 등록기준지 00시 00구 00길 00 주소 00시 00구 00길 00(우편번호) 전화 000 - 0000

피 고 1. 김  $\triangle$   $\triangle$  ( $\oplus$   $\triangle$   $\triangle$ )

1900년 0월 0일생

2. 정 Δ Δ (鄭ΔΔ)

1900년 0월 0일생

피고들의 등록기준지: 원고와 같음

피고들의 주소: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
피고들의 특별대리인 □ □

주소: 00시 00구 00길 00

우편번호: 00000

#### 입양무효확인의 소

### 청 구 취 지

- 1.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20○○. ○. ○. ○○시 ○○구청장에게 신고한 입양은 무효임을 확인한다.
- 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.

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## 청 구 원 인



- 1. 피고들은 입양관계증명서 상 20○○. ○. 원고에게 입양된 양 신고되어 있습니다.
- 2. 그러나 사실은 피고들의 생부인 소외 김□□는 20○○. ○. ○. 원고 및 피고들의 생모인 소외 박□□과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피고들을 원고의 양자로 하는입양신고를 함으로서 입양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상 그와같이 등재된 것입니다.
- 3.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위 입양신고는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합의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로 인한 입양은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그 확인을 구하고 자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.

#### 입 증 방 법

1. 갑제 1호증의 1, 2 각 가족관계증명서

1. 갑제 2호증의 1, 2 각 입양관계증명서

1. 갑제 3호증의 1, 2 각 기본증명서

## 첨 부 서 류

1. 소장부본 1통

1. 위 입증방법 각 1통

1. 납부서 1통

2000년 0월 0일

위 원고 ㅇ ㅇ ㅇ (인)

### ㅇㅇ가정법원 귀중

	T			
제출법원	※ 아래참조	관련법규	가사소송법 제30, 31조 <b>및 기</b>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	
			민법 제883조	
	·당사자			
제기권자	·법정대리인			
	・4촌 이내의 친족(가사소송법 제31, 23조)			
	· 양친자중 일방이 원고가 될 때에는 다른 일방을 상대방으로 함			
	·제3자가 원고가 될 경우에는 양친자 쌍방을 상대방으로, 일방이			
상 대 방	사망하였으면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함.			
	· 양친자가 모두 사망하였으면 검사를 상대방으로 함.			
	(가사소송법 제31, 24조)			
1 - 1 L	과 > H &			
제출부수	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			
불복절차	· 항소(가사소송법 제19조제1항)			
및 기간	·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이내(가사소송법 제19조제1항)			
म्रो स्ट	·인지액 : 20,000원(☞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)			
	・송달료 : 당사자수× 000원(1회송달료) ×12회분			
	1. 당사자간에 입양에	대한 합의가 없	는 때	
	2.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자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			
입양무효	양무효 3. 피성년후견인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되는 경우로서 가정법원 유 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			
사 유				
	4. 양자가 될 자가 13세 미만임에도 법정대리인의 승낙이 없었던 때			
	5. 존속 또는 연장자를	항자로 한 때		

# ※ 제 출 법 원

- 1. 양부모중 1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
- 2.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중 1인의 최후 주소지의 가정법원